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6. 20.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83호로 2022년 6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권영향평가 실시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나. 인권위원회 구성 단서 신설 및 구성원의 명확화(안 제11조)
- 다.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등 전반적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2.5.12. ~ 6.2./21일간):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방침에 따라 시행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의2는 구청장이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영향평가 제외대상의 내용을 신설함.
- 안 제11조제2항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그 밖에 개정 조문은 내용을 명확히 하고 띄어쓰기 등을 올바르게 정비한 것임.

○ 검토결과

- 인권영향평가는 그 운영을 통하여 정책 등의 인권적 정합성을 점검·개선하는 목적을 가짐. 구청장이 자치법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본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의 하나로 판단됨. 또한 현재 방침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에 관하여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이므로 인권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보임.

다만, 이 조례는 영등포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 존중의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 내부 행정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으로 판단됨.
- 그밖에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올바르게 정리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 고 자 료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